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측정장비 동산종합보험 과업지시서

2024. 05.



전파기반본부 전파기술연구센터

<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>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, 공정한 거래·상생문화를 정착·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적절한 사업 원가를 조사·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합니다.
- (2)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, 사업기간 연장,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,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3) 사업의 특성,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'간접비'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4)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5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, 민원해결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6) 천재지변,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7)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·자료·물건 등의 소유·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,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9)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, 분쟁조정신청,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0) 계약해제·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,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,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1)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측정장비 동산종합보험 과업지시서

1. 가입 개요

- 입찰건명 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측정장비 동산종합보험 가입
-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적격심사)
- 보험기간 : 계약일로부터 1년간
(2024. 6. 24. 00:00 ~ 2025. 6. 23. 24:00까지 365일간)
- 사업예산 : 금47,826,300원(금사천칠백팔십이만육천삼백원)/VAT미포함
*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(금융·보험 용역)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며 사업예산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
- 추진목적 : 측정장비 중 잔존가액 100만원 이상의 고가장비 또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하여 각종 재해 및 재난을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산종합보험 가입
※ 관련근거 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측정장비 관리지침 제16조(동산종합보험)

2. 보험 종류 및 보험조건

- 보험상품 : 동산종합보험
※ 동산종합보험은 보험가입 대상을 동산(動産)으로 하고 있으며, 동산의 보관·운송·사용 중 악관상 특별히 면책위험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손해를 포괄 담보하는 보험
- 보험 대상장비(보험목적물) : 측정장비 504대(별첨 세부내역서 참조)
- 보상기준 : 제조달가액 100% 보상
※ 취득가액 : 22,562,153,030원
※ 재조달가액 : 25,630,425,000원

- (12)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,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,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,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또는,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,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,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3)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(14)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15)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.
- (16)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,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,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>
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계약서 교부의무, ▲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, ▲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
 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부당한 거래조건(특약) 설정, ▲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▲부당한 위탁취소, ▲부당 반품, ▲기술자료 부당 요구, ▲기술유용, ▲경영간섭, ▲보복행위 등
- (17)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·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,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(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)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.
 - (1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·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기타사항 >

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(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-307, 2018.8.31.)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·보호의무를 준수하고,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.

○ 보험조건 및 세부조건

- 동산종합보험 기본담보(화재·폭발·도난·파손·잡위험 담보) 및 특별약관(전자기기 추가약관)에 따른 손해에 대한 비용 보상
- 동산종합보험 특별약관
 - ① 제조달가액 특별약관(제조달가액 기준 및 비례보상)
 - ② 소재지: 대한민국 전국 일원
 - ③ 전기적사고·기계적사고 특별약관
 - ④ 풍수재위험 특별약관
 - ⑤ 자기부담금(Desuctible) 없음

3. 과업 관련 문의

- 문의처 : 전파기반본부 전파기술연구센터 고병휘 대리
- 내선 : 061-350-1435 / E-mail : kbh0629@kca.kr